

(2023학년도 제1차)

규정심의위원회

- 일시: 2023. 3. 9.(목), 16:10
- 심의 안건

1. 「WOW통합상담 관리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진로취업지원센터)
2. 「원격수업운영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원격교육지원센터)
3. 「기자재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교원인사팀)
4.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에 관한 건(학사관리팀)



우석대학교
WOOSUK UNIVERSITY

기획예산팀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통합상담관리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진로취업지원센터	관련부서	상담 관련 부서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우리대학 학생들의 대학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심층적인 상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통합상담 지원체제를 운영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취업 요구와 관련하여 대학 부서간 통합적·체계적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 성공과 취업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학생 특성에 대비한 적절한 상담 지원과 지속적인 상담 품질 질 개선을 위한 통합상담운영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기대효과	• 학생에 대한 상담 서비스 재정립과 부서 간 상담 연계를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 성공적인 취업성공 사례 확보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치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 (포털 및 홈페이지)	해당사항 없음	
	다. 의견제출 유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해당사항 없음	
첨부자료	「통합상담 관리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정(안) 1부.		

WOW통합상담 관리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의 취업 성공과 취업의 질을 확보하고자 대학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진로취업 요구와 관련하여 부서간 통합적·체계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 특성에 대비한 상담 지원과 품질 개선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WOW통합상담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상담 체계 구축 및 총괄 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상담 이력에 대한 통합 DB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통합상담 운영실적, 성과분석, 개선방안 등 환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이 된다.

③진로취업지원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외 위원은 위원장이 교내 및 외부인을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직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실무위원회)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진로취업지원센터 직원이 된다.

제7조(비밀엄수 의무) 위원 및 간사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제8조(경비) 이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원격수업운영규정」		
입안형태	☐ 제 정		

「원격수업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9조(원격수업 교과목의 개설 및 학점인정 제한) ①전공교과목 중 원격수업으로 개설하는 학점 수는 해당 연도 학기별 각 전공(학과) 개설 교과목 총 학점 수의 20% 이내로 한다. 단, 계약학과 또는 융합전공, 온라인 학위과정 <u>에서 개설하는 원격수업</u>은 예외로 한다. ②교양교과목 중 원격수업으로 개설하는 학점 수는 해당 연도 학기별 개설된 교양교과목 총 학점 수의 20% 이내로 한다. 단, 계약학과 또는 융합전공, 온라인 학위과정 <u>에서 개설하는 원격수업</u>은 예외로 한다. ③원격수업 교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수의 20% 이내로 하며, 국내외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로 취득한 원격수업 교과목 학점도 포함한다. 단, 계약학과 또는 융합전공, 온라인 학위과정 <u>에서 개설하는 원격수업</u>은 예외로 한다. ④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본교 소속 학생은 본교 및 외국대학 학위취득을 위해 필요한 각 학점 수의 20% 이내에서 원격수업 교과목을 인정하고, 외국대학 소속 학생은 본교 학위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점 수의 20%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온라인 학위과정에서 개설하는 원격수업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30.) ⑤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의 경우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수의 20% 이내에서 원격수업 교과목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단, 온라인 학위과정에서 개설하는 원격수업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30.) ⑥<삭제 2022.3.17.> ⑦<삭제 2022.3.17.>	제9조(원격수업 교과목의 개설 및 학점인정 제한) ①전공교과목 중 원격수업 교과목 수는 해당 연도 학기별 각 전공(학과)의 개설된 총 교과목 학점 수의 20% 이내로 한다. 단, 계약학과 또는 융합전공, 온라인 학위과정, <u>평생교육지원 대상 학생</u>은 예외로 한다. ②교양교과목 중 원격수업 교과목 수는 해당 연도 학기별 개설된 교양교과목 총 학점 수의 20% 이내로 한다. 단, 계약학과 또는 융합전공, 온라인 학위과정, <u>평생교육지원 대상 학생</u>은 예외로 한다. ③원격수업 교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수의 20% 이내로 하며, 국내외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로 취득한 원격수업 교과목 학점도 포함한다. 단, 계약학과 또는 융합전공, 온라인 학위과정, <u>평생교육지원 대상 학생</u>은 예외로 한다. ④ 현행과 동일 ⑤ 현행과 동일 ⑥ 현행과 동일 ⑦ 현행과 동일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학사관리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재정지원 사업의 원활한 지원 및 추진 주체 조정 필요			
관련근거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산학협력단 산하의 특성화지원센터를 특성화추진단으로 변경 ● 18학점 이상 취득할 경우 이수증 수여를 삭제하고 수료증 수여로 통일			
기대효과	● 특성화 트랙 수료 학생 수 증가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치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O)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 (포털 및 홈페이지)	해당사항 없음		
	다. 의견제출 유무	해당사항 없음(O) 해당사항 있음()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해당사항 없음		
첨부자료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6절 특성화 트랙	제6절 특성화 트랙
제122조의2(특성화 트랙) ①특성화 트랙이란 취업 및 창업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및 사회에 적합한 특성화 전문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편성된 과정을 말한다. ②학과 및 융·복합 특성화 트랙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과(부)는 교육과정 및 책임교원을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u>특성화지원센터</u>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책임교원은 해당 특성화 트랙의 수업지원 및 학생지도를 담당한다. ④특성화 트랙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특성화트랙 이수신청서를 해당 특성화트랙 책임교원을 경유하여 <u>특성화지원센터</u>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특성화 트랙 선발인원은 학과(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⑥해당 특성화 트랙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u>이수증을,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u> <u>수료증을</u> 수여하며,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⑦특성화 트랙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2조의2(특성화 트랙) ①현행과 같음 ②학과 및 융·복합 특성화 트랙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과(부)는 교육과정 및 책임교원을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u>특성화추진단</u>에 제출하여 <u>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u>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현행과 같음 ④특성화 트랙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특성화트랙 이수신청서를 해당 특성화트랙 책임교원을 경유하여 <u>특성화추진단</u>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현행과 같음 ⑥해당 특성화 트랙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수료증을 수여하며,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⑦현행과 같음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기자재운영위원회규정」		
입안형태	☐ 제 정		

「기자재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u>학사관리</u> 팀 직원이 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u>교원인사</u> 팀 직원이 된다.
제6조(구매 관련 심의 절차) ① <u>학사관리</u> 팀은 각 기관(학과, 연구소, 산학협력단 등)의 기자재 구매요청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관련서류를 참고하여, 구매의 필요성 및 타당성, 중복 여부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기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매불가” 판정을 받은 기자재는 구매할 수 없으며,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구매 관련 심의 절차) ① <u>교원인사</u> 팀은 각 기관(학과, 연구소, 산학협력단 등)의 기자재 구매요청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신설)	<u>부 칙</u> <u>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